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청회 회의록

2013. 10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작성자 과명:물관리정책과 담당: 박현우 팀장: 김상우 과장: 배광환 (☎2133-3763) (☎2133-3760) (☎2133-3750)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청회 회의록

〈회의개요〉			
	개최일시	:	2013. 10. 14(월) 09:30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토론주제	: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참 석 자	:	좌장, 토론자 5명(관련 분야 전문가 등)

□ 토론순서 및 내용

- 참석자 소개 및 물관리정책관 인사말씀
- 제안설명(물관리정책과장)
- 지정토론
 - · ○○○ : 이 자리에 다시 있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05년도 빗물조 례 만들때 참여하였고, 빗물의 인식이 좋아져 새롭게 개정하는 자리에 다시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빗물은 가장 깨끗합니다. 잘 관리하면 정말 좋은 자원입니다. 오늘 토론하게 될 5명의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등) 발표는 ○○○ 의원부터 하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입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시의원으로서 오늘 나오게 될 여러 의견을 수합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빗물관리에 대한 내용은 05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진행하였으나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빗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 보더라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시설 이 3가지 밖에 없고, 서울시 조례에서도 권고만 있지 의무 가 없는 실정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물재이 용 1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4천억 필요하나 예산을 보면 년 20억인데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례가 활성화 되고 연속되기 위해선 재원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의 권고 사항은 성공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물순환 시민위원회도 힘이 없 을 거 같아 우려됩니다. 이런문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 자체 장의 의지가 있어야 함. 수원시의 사례를 봐도 그렇 고, 지차체 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며, 서울시장이 사명을 같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 시장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이 도로 및 교통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종류(고속도로,저속도로)에 상관없이 고속도로용 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리고 투수포장, 투수블록포장에 대해 연구하다보니 빗물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빗물 유입시 강도 약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수, 불투수 블록 비교 실험을 진행해 온 결과 지지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구조적 안정할 뿐 아니라 투수효과, 환경처리 효과가 있었습니다.이건 보도뿐만 아니라 저속도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적용이 안되었을까? 도로사업에서는 이론보다 경험이 중요. 기존 기술자들에게 실증적인 자료 전달이 필요하며 가시적인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하나, 물순환시민위원회 출발 좋음. 그러나 영구적 운영보다는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만 운영한다는 제한을 두고 소기목적 달성후에는 해

산한다는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 : '물과 흙은 상극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주신 것 같습 니다.

· ㅇㅇㅇ : 저는 지정토론 7가지내용 수록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부개정 타당성이 시기적정 하 냐? 기존 빗물관리조례는 물분야 단독의 영역으로서 설 치대상이 다른 인프라시설에 설치되는 실정으로 여러 부 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물분야에 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프라 한계가 발 생하였고. 앞으로 물분야 단독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분야가 협력해야함. 한정된 예산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 합니다. 제도적 정비차원에서, 현재로서 시기적절함, 단 순 빗물관리에서 물순환회복과 저영향개발은 아주 의미 가 큼. 서울시의 한차원 높은 도시관리의지임. 국토교통 부에서 국계법 개정하였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1장 총칙 8조 3항에 자 연상태 물순한 회복이 이라는 부분 신설하였습니다. 의미 는 그대로 담김. 지역내 영향 최소화. 인프라시설은 회색 인프라시설에서 그린 인프라시설로 개정할 수 있도록 국 토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프라시설을 계속 신설할 수는 없다. 서울시는 기존도시이며 시민들과 개발 자의 동참필요. 원인자부담 원칙이 잘 반영된거 같습니 다. 의무화의 기본적 사항. 네 번째 서울시의 다양한 특 성(풍수해, 가뭄, 지하수 문제등)에 맞춰 반영개정이 필 요하다고 봅니다. 여섯번째 홍보- 사업개발 우선. 교육확 대가 필요. 교육의 필요성 아주 중요하다고 보며, 산업확 대를 위한 교육 반드시필요하며, 국제사회에 공헌할수 있 도록 하는 것도 중요. 서울시 11개과와 빗물관리 T/F구 성, 국제적으로도 유래를 찾을수 없는 사례이며. 선진행 정기술임.

· ○○○ : (○○○은)오랫동안 하셔서 잘 알고 계시다. 아무튼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 ○○○ : 물분야전문은 아님. 옥상녹화, 외피부분, 외부공간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음. 궁극적 가시적인 물순환 회복부 분과 연계. 자연스레 건설부문 연계됨. 물분야 단독 예산 은 어려우며 여러분야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제 LID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유 럽 6개국 지속가능한 건설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 LID가 생존과 연결되었다라는 인식확산이 전제조건이라 봅니다. 제안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LID 물순환과 연계되어야 하지만 너무 물분야에 국한됨. 여러 분야에서 협동적.협의 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협의제도, 허가권과 연계, 저 영향 계획구역 지정은 괄목할 만한 성과. 그러나 시장에서 받아 들이기에는 시장의 몫, 부담. 빗물유출 부담금의 개 념으로 해야하나 내꺼 아닌 것에는 정책 반발우려, 기존 개발 내에서 LID적용가능 한 방법, 확대 할 수 있는 홍보 가 이루어 질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본 조례의 발 전이라고 봅니다.

- · ○○○ : 비용문제는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새로운 기술개발로 해결, LID는 물에 국한되는게 아쉬움.
- · ○○○ : 50여년간 불투수층 증가로 물순환 왜곡됨. 지속가능한 수 자원 확보차원에서 조례개정. 금년도 빗물, 물재이용 기본 계획 용역완료. 빗물 유출량 2050년도까지 목표량설정. 추진을 위해 공공에 선도적 추진, 민간지원, 빗물주치의, 물순환도시조성을 위한 MOU체결 등을 하였음. 빗물마을 조성중 (도봉구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 10월7일 시장 방침. 정량적 목표 제시에 의의가 있음. 참석해주신 여러 분의 다양한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 ○○○ : 조례개정안에 대해 잘 들었으며, 앞서가는 지자체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환경부 소방방재청등의 의견 잘 반영한 조례라 생각이듭니다. 조례이후 구체적 기준이 나올거라 예상되는데 사후 인증될 수 있는 프로세스마련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사와 접촉을 많이하고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여건상 불투

수면 침투시설 인공시설 면적이 적을때 인공지반면적 대상지반이 특별할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해줘야 되지 않는지?

- · ○○○ :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내용이 빠져 아쉬움. 제목에 빗물관리가 들어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 · ○○○ : 서울대 건설공학연구소 근무. 간략한 의견제시합니다. 빗물관리조례 의무적, 설치권고시설이 있음. 지붕이 있는 전체시설, 지붕이 없는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 : 서울대건설공학연구소 근무. 조례2조 3항에 빗물관리시설 침투시설, 저류시설 규정되어있는데, 정화시설, 이용시설 까지 추가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
- · ○○○ : 시간없어 얘기 못했는데 본인도 지하뿐 아니라 지상에 가 두는 시설로 정의 추가
- · ○○○ : 현장여건에 맞는 시설을 적절히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인 제시를 해주었으면 함.
- · ○○○ : 혜성엔지니어링 근무. 빗물유출부담금 규정에 대해 부과, 징수를 어떻게 할건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음. 신규건축물 제 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음. 지속적 관리 안되고 있음. 그러나 혜택은 계속되고 있음.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 : 유출부담금은 아직 없음.

○ 질의응답

- · ○○○ : 정의에 해수로만 정의, 구체적 열거 필요. 2조2항에 빗물 관리시설을 저류,침투로 정하고 있음. 단정을 지으면 확장이 안 되므로 좀 더 다양하게 정하였으면 함. 6조에 개별필지 1필지, 필지단위가 아니라 시설단위라 되어있음. 용어의 일 치가 필요. 6조3항. 시장이 정하는 부담량. 문맥을 좀더 매끄럽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19조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에 시의원 빠졌음. 위촉직은 기간 정해서 했으면, 빗물은 충분히 마실수 있는 물. 조례에 이런 가능성도 넣어줬으면.
- · ○○○ : 도시농업네트워크에 근무. 내용이 하드웨어만 다뤄진거 같

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다뤄줬으면 합니다. 질문) 배과 장님. 서울시에서 옥상녹화를 지원하고 있음. 빗물관리조 례 개정안에 옥상녹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않나?

- · ○○○ : 푸른도시국에서 올해 33개소 추진중으로 알고 있음. 옥상녹화는 현재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되고 있음. 시장방침시 민간지원 15년도에 반영내용을 건의하였고, 시장님도 긍정적인반응을 보였음.
- · ○○○ : 도시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물순환은 빗물침투,저류,이용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하나 빗물관리조례에는 침투,저류가 있고, 물재이용조례에 빗물이용시설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음. 조례에 하나로 합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 ○○○ : 보도블록 조합에서 근무. 투수블록에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업계에 투수블록, 포장블록 등 개발했음. 조례에 적극적 반영하여 많이 써줬으면 함.
- · ○○○ : 마지막으로 지정토론자 한말씀 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31조에 시장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해야 한다고 바꿔야 함. 용적률 등 건축과랑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봄.
- · ○○○ : 빗물관리 추가비용발생할 것임. 17년은 시행은 너무 늦음. 빗물재이용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 · ○○○ : '조례명칭에 빗물관리 다시 추가하자'는 그간 확대를 위해 했으나 다시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미임. 기업에서는 서울시의 의지를 믿고 동참요청합니다.
- · ○○○ : 옥상녹화 설계심의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 · ㅇㅇㅇ :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작단계로 점차 보완해 나가겠음.

○ 총 평

· ○○○ : 기후변화시대 물정책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물관리가 전체를 포괄해야 하지않나? 우리나라 자료로 만들어야함. 다른 강우특성 등등,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정책이 필요. 시민참여와 지지로 실패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함.